
심판 운영 매뉴얼

2023. 9

대한근대5종연맹



목 차

<input type="checkbox"/> 심판위원회 구성 및 회의	2
<input type="checkbox"/> 심판등록 및 관리	3
<input type="checkbox"/> 상임심판 운영	4
<input type="checkbox"/> 심판양성교육	6
<input type="checkbox"/> 심판평가	6
<input type="checkbox"/> 심판배정	7
<input type="checkbox"/> 상벌	9
<input type="checkbox"/> 필요수당 지급 기준	15
<input type="checkbox"/> 참고자료/스포츠법	20

심판운영 매뉴얼(안)

심판위원회 구성 및 회의

- 근거 : 연맹 정관 제37조(각종위원회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
- 구성 :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 위원 최소 9인에서 15인 이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이내)
 -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
 - 임기는 4년(본 연맹 정기총회 기준)
 - 심판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배정, 분석·평가, 교육 등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 가능
- 요건
 - 연맹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배제
 -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는 20% 초과할 수 없음
 - 경기인(전국규모대회 이상 입상자) 50% 이상 포함
 - 기능
 - 심판위원회 자격을 취득한 심판원 등 심판운영과 관련된 사항(자)에게 적용
 - 심판위원회 규정, 수칙 및 세칙 등 제·개정
 - 심판의 권익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 심판 자격 취득 및 교육
 - 심판 등록 및 관리
 - 심판의 평가
 - 상임 심판지원 및 운영
 - 심판의 배정 등
 - 회의
 - 심판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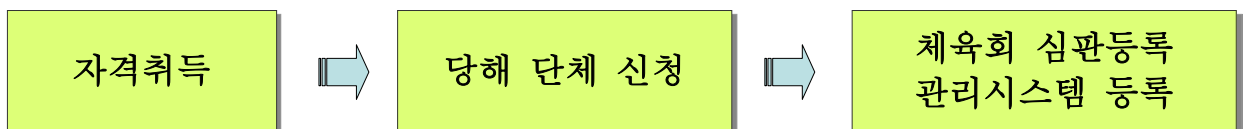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심판등록 및 관리

- 자격취득 : 국제연맹 및 당해 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거 자격 부여
 - 자격조건 : 국적, 연령기준, 체력조건, 결격사유 등 명시
 - 다른 국가에서 심판자격을 취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당해 단체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심판 등급에 따라 단계별 응시자격 및 요건 등 명확히
 - 경기규칙 등 이론 시험
 - 급수별 활동기간, 교육이수, 체력측정, 신체검사, 연령 기준 등
- 등급분류 : 심판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하되, 단체별 특성이나 국제심판 분류에 따름
 - 국제심판 / 국내심판
 - 1급(A) (가)
 - 2급(B) (나)
 - 3급(C) (다)
 - 기타(D) (라)

※ 향후 심판등록시스템 구축 결과에 따라 분류

- 심판등록 절차



- 등록대상 : 당해 단체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심판(이후 자격취득 즉시 등록)
 - 기본 사항(소속, 학력, 출신지 등 인적사항, 자격취득일 등)
 - 심판 활동 경력(국·내외 대회 참여, 연수 등 활동 보고서) 및 선수·지도자 경력
 - 심판고과 사항(평가결과, 상벌, 교육참여, 승급이력 등)
 - 경기보고서 등
- 심판행동강령(별표 1) 숙지 : 모든 심판은 “심판행동강령”을 숙지해야 함.

○ 등록시기 : 2015년 1월부터

심판양성교육

- 체육회 주관 클린 심판아카데미 이수
 - 대상 : 본 연맹에서 심판의 자격을 취득한 모든 심판원.
 - 체육회의 교육일정에 따라 추천 요청시 본 연맹은 미 이수 심판에 대하여 추천
 - 1급 상당 심판 우선 추천(2~3급 심판 순으로 단계적 이수토록 함)
 - 인센티브 : 본 연맹 심판운영과 관련된 사업 추진시 우선 반영
 - 국제종합경기 및 종목별 대회 대동심판 추천
 -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상임심판에 이어 이수자 우선 배정
 - 심판원간 대회운영에 따른 이견 발생 시 이수자 의견 적극 반영
 - 심판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가능

- 본 연맹 심판 교육 :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교육계획을 수립·운영
 - 시기 : 대회시즌 및 비시즌으로 구분하여 운영(매년 2회 이상 실시)
 - ※ 대회 개최전 심판 소양 교육 실시
 - 집합교육(윤리의식 및 교양강좌, 리더십, 스포츠 법 등)
 - 보수교육(경기규칙, 기술·실기, 비디오 판독·분석 등)
 - 평가 및 강습회 등 (심판 사례별 대응 방안 교육 및 토론 등)
 - 내용 :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 체육회 심판위원 특강 필수 선택
 - 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강사진 적극 활용
 - 경기규칙 및 실기교육은 IF, AF 강사 초빙 및 상임심판을 강사로 활용

심판평가

- 평가시행 : 본 연맹은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 고과 관리,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
 - 등급별
 - 상임심판
 - 국제심판 1급, 2급, 3급, 기타 등

- 국내심판 1급, 2급, 3급, 기타 등

○ 평가대상 대회 :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 평가자

- 심판위원회 위원 또는 배정위원(규정에 의거 필요에 따라 감독관 위촉)
/ 수시

- 참가지도자, 선수

- 팀 관계자(단장, 주무 등)

- 동료심판(3급 → 2급 → 1급 → 상임심판)

연 1회 이상 실시

*상임심판: 2회 이상 실시

○ 평가방법 : 가맹경기단체별 실정에 맞게 평가서 및 지표(필수사항 20개 이상 포함)
등을 설정·시행(5단계: S - A - B - C - D등급 평가)

- 세칙 제정 필요

예) 심판평가 세칙(별표 5)

□ 평가서(필수사항 / 별표 6)

심판배정

□ 심판기피 및 제척

○ 경기 참가하는 선수·지도자의 친인척,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 불가(단체경기의 경우 해당 팀 소속 출신을 말함)

○ 선수·지도자 등이 심판을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기피 요청 가능

- 당해 단체 심판위원회는 사유를 심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판에서 제외

○ 지정된 숙소 활용과 연습경기장의 출입 제한

○ 대회참가 지도자·선수·팀 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 심판배정 : 본 연맹의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

○ 본 연맹은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사전공개 필수(대회개최 최소 1일전)

○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 배정은 불가(단체경기, 개인경기 및 단체전, 개인경기(체급경기 등))

○ 심판 배정 시 한 경기에 동일학교 출신자 참여 배제 원칙

○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국가대표 선발전 + 국제심판) 우선 배정 → 클린심판아카데미 이수자 → 당해 단체 교육참가자 → 기타 등급 순위에 따름 / 국내종합대회시는 각 시·도 출신 형평성 유지

○ 배정된 심판은 대회참가요강, 경기규칙, 제규정 등 재 숙지

- 본 연맹은 경기장에 별도의 심판운영(대기)실 배치
 - “심판행동강령” 부착 필수
- 배정된 심판은 경기장에 최소 2시간 전에 도착
- 심판판정 : 심판은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
 - 심판의 관련규정, 당해 단체의 규약, 경기규칙 등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경주
 - 경기 진행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짐
 -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는 비디오 재 판독 실시
- 심판의 품위
 - 심판의 기본소양 획득 노력
 - 청렴, 부당이득 회피, 도박 금지
 - 심판의 신분증서 제작·패용
 - 통일된 복장·장비 사용
 - 음주 금지(필요시 음주측정 제도화)
 - 휴대전화 등 사용금지
- 경기진행
 - 주심, 부심(선심 등)간 정보공유로 협동성 유지
 - 대표자 회의 시 결정사항 등
 - 계시요원 위치 등 확인
 - 경기장 확인
 - 경기시설, 용기구 사전 점검 실시(전광판, 부심기, 라인, 골대, 지주, 비디오 녹화 등)
 - 입장관중 안전 점검 확인
 - 대진 및 출전선수 확인
 - 참가신청 선수(팀) 신분 확인
 - 선수 경기복, 안전관리장치(장비 등) 점검
 - 대회 공식 진행절차에 따라 시작(심판진 실명 소개 등)
 - 공정판정
 - 매 경기 판정 시 일관성, 안정성 유지
 - 보상 판정 배제
 - 출전선수에 대한 선입견 없어야 함
 - 빠르게 간단, 명료, 명확히 판정(승패, 아웃 등)
 - 자세, 동작, 구령 등 확실하게 취함
 - 소청처리
 -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상고는 해당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 정확 처리

- 경기진행시 상고 이외의 제기 등은 경기규칙 및 해석에 따라 명확히 설명 후 즉시 경기진행
- 경기종료
 - 경기시간(매치포인트 등)엄수
 - 명확한 자세, 동작, 구령 등으로 경기종료 선언
 - 선수(팀) 상호간 인사 및 격려토록 유도
- 기록확인
 -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은 기록원과 확인 후 상호 서명(필요시 양 팀 주장 등 포함)
 - 경기영상물은 최소 1개월 이상 보관
 - 매 경기결과 DB화
- 경기보고
 - 경기종료 후 경기보고서 작성(당해 단체 심판위원회(배정 위원회)에 제출)
- 마무리
 - 경기장 퇴장 시 관중석 및 경기 진행석에 예의를 갖추고 퇴장
 - 심판 간 경기진행 및 판정에 대한 비디오 분석 등 상호 토론
 - 판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언론 인터뷰 불가

상 별

- 상별
 - 명백한 오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심판의 품위 손상 등은 당해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
 - 평가결과, 오심 누적 및 횡수에 따라 심판자격 강등 또는 박탈
- 포상
 - 평가결과 및 교육 등 우수자는 체육회 등에 표창 상인과 심판승급 시 인센티브 부여
 - 대한민국체육상 및 대한체육회 체육상 등
 - 우수심판은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 지원 요청 가능
- 기타사항
 - 등록된 모든 심판은 체육회의 심판 관련 사업,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참고 / 스포츠법(붙임)

심 판 행 동 강 령

1. 모든 경기를 양심과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2. 경기배정 등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해서는 안 된다.
4. 선수, 지도자, 팀 관계자와 비공식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5. 직무 중에는 항상 복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어느 장소에서나 심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6. 활동기간 중이나 퇴임 후에도 심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수행 관련 자료 등을 외부에 일체 누설·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선수, 지도자, 팀 관계자와는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규칙에 관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한다.
8. 아래 4대 클린심판상은 항상 숙지해야 한다.

1. 스포츠가 공공의 신뢰와 선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심판
2. 공정한 스포츠 경기를 위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판정하는 심판
3. 스포츠맨십과 스포츠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실천하며 품격을 지키는 심판
4. 올바른 스포츠문화 소양과 심판 정신으로 스포츠 발전에 참여하는 심판

별표 2

□ 출장비

(단위:원)

철도운임	선발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체 재 비			비고
				일비	숙박비	식비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지역 70,000)	25,000	숙박시설 실정에 따라 상한액 예외 인정

□ 수당 지급표

구 분	금 액	비 고
경기위원장 및 대회운영총괄	150,000원/일	
경기이사	150,000원/일	
종목담당이사(정)	150,000원/일	
종목담당이사(부)	120,000원/일	
심판위원	20,000원/시간	
기타인력 등	30,000원/시간	전문인력, 단순인력, 청소, 운영 등 ※ 본 연맹이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기타 인력 등

별표 3

심판평가표()

대회명			
성명		생년월일	
주최.주관		일정	
장소		평가자	
종목		평가시간	

평가종목	수영(20)	펜싱(20)	승마(20)	사격(20)	승마(20)	기타(20)
심판배정(120)						
평가점수(120)						
경기중 특이사항						

평가자	심판위원장	심판위원	평가자 2(지도자)	평가자 2(기타)
성명				
서명				

평가자의견	
-------	--

□ 평가지표(필수사항)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비 고
		평점	평가	
□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취득년도(현 급수 기준) ○ 활동기간 ○ 심판참가 횟수(전국규모대회 이상) ○ 교육 참가 횟수 ○ 최근 상벌 횟수(징계 건당 -?) 			심판위원장
□ 심판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자세(장비 등 확보) ○ 복장(용모단정) ○ 음주측정 ○ 경기장 점검 ○ 대진(팀, 선수) 확인 			평가자 전체
□ 경기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개시 ○ 집중력 ○ 경기운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진 상호 협조체계 - 심판 위치 확보 - 판정 휘슬동작 - 체력축적 ○ 명확한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지도자 이의 제기 - 비디오 판독 제기 - 입장관중 여론 ○ 소청(이의 제기) 처리 ○ 경기규칙 숙지 			평가자 전체
□ 경기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지 관리(확인) ○ 경기보고서 작성 ○ 종료 후 자체평가 ○ 퇴장 자세 			평가자 전체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평가자 전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3(선수 등의 금지행위)

-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28> <시행일 : 2014. 7. 29> 제14조의 3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 (학생선수 제외)·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 제14조의 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 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